주 문

1. 피고 E는 원고 A에게 50,000,000원,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2,000,000원, 원고 C에 게 50,2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6% 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들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, 원고들과 피고 E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